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6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.

발 의 자:이용우·이기헌·김남근

박해철 • 이원택 • 용혜인

민병덕 • 박정현 • 정혜경

임미애 • 한창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유상 ·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하면서, 배출권 할당의 기준과 유상 · 무상 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 이에 시행령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3기 계획기간 동안의 무상할당 배출권비율을 90% 이내로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EU가 2021년부터 무상할당 대상업종을 175개에서 50여 개로 축소하는 등 국제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을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, 국내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무상할당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.

이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50% 이내로 축소하도록

하여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(안 법률 제20229호 온실 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22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후단 중 "국내"를 "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국내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새롭게 설정되는 계획기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229호 온실가스 배출권	법률 제20229호 온실가스 배출권		
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	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		
부개정법률	부개정법률		
제12조(배출권의 할당) ①・②	제12조(배출권의 할당) ①・②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	③		
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			
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			
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			
수 있다. 이 경우 무상으로 할			
당하는 배출권의 비율(이하			
"무상할당비율"이라 한다) 은	<u>100분의 50 이</u>		
<u>국내</u>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	<u>내의 범위에서 국내</u>		
치는 영향, 탄소 배출에 가격			
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			
기후위기 대응 동향, 부문별・			
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,			
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			
향,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			
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다			
만,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			
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			
수 없다.			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		